하동군 고시 제2020-1466호

#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발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, 하동군 고시 제2020-1442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합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하 동 군 수

## 1.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

※ 하동군 행정명령의 변경사항(11.27.~) 외에는 경남도 행정명령(11.26.~) '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사항' 을 적용

### 가. 다중이용시설

① **(중점·일반관리시설)** 집합금지 및 이용인원 제한 확대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
❍ 적용대상

| 구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(2단계) |
|---|---|
| 유흥시설 3종<br>(유흥,단란, 콜라텍) | ▸ **집합금지** |
| 노래연습장 | ▸ **21시 이후 운영중단**<br>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br>▸ 음식 섭취 금지<br>▸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| 식당·카페<br>(일반·휴게음식점,<br>제과점영업) | ▸ **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**<br>▸ **음식점은 21시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**<br>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 이상) |
| 방문판매 등<br>직접판매홍보관 | ▸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br>▸ 21시 이후 운영중단<br>▸ 노래 음식 제공 금지 |

| | |
|---|---|
| 실내체육시설 | ▸ **21시 이후 운영중단**<br>▸ 음식 섭취 금지<br>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br>▸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|
| 결혼식장<br>장례식장 | ▸ **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**<br>▸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목욕장업<br>오락실 | ▸ **음식 섭취 금지**<br>▸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| PC방 | ▸ **음식 섭취 금지**(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)<br>▸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| 학원<br>(교습소 포함) | ▸ **음식 섭취 금지**<br>▸ ①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br>②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<br>※ ①안 ②안 중 선택<br>▸ 휴원명령(11.19(목) ~ 11.22(일)) |
| 스터디카페<br>(독서실 포함) | ▸ **음식 섭취 금지**<br>▸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br>▸ 단체룸은 50%로 인원제한, 21시이후 운영중단 |
| 이·미용업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| 상점·마트 | ▸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(300㎡ 이상) |
| 기타시설 | ▸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|

**※ 1단계 기본 방역 수칙**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**의무화는 필수 포함**

## 나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① **(마스크 착용 의무화)** 실내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(집회, 시위, 스포츠 관람 등)

② **(모임·행사)** 100인이상 모임·행사 금지
③ **(교통시설)** 교통수단(차량)내 음식 섭취 금지
④ **(등교)** 밀집도 1/3원칙(고등학교는 2/3)
※ 학교별 교육청과 협의 추진
⑤ **(종교활동)** 정규예배, 미사, 법회, 시일식 등 좌석수의 20%이내로 인원참여, 모임·식사 금지

## 2. 처분당사자

- 하동군내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하동군내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·행사 주최·주관·참석자
- 하동군 소재 모든 종교시설

## 3. 처분내용 : 방역수칙 의무화

## 4. 처분근거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, 2의3, 2의4

## 5. 처분사유

하동군 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 발생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있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

## 6. 처분기간 : 2020. 11. 28.(토) 00:00 ~ 2020. 12. 04(금) 24:00

## 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1. 28. 0시부터

**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**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**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**

1)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 끝.